

第294回國會
(定期會)

行政安全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11月23日(火)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8.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안
4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2.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53.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5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61.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8. 警察大學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6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2.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
73.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
74. 戰鬥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7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권경석·김소남·김성조·김재경·김충조·김학송·문학진·박지원·박우순·박준선·백원우·우윤근·이명규·이용섭·장세환·전혜숙·정의화·홍영표 의원 발의) 7
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태원·이한성·유기준·권영진·이해봉·신지호·박대해·이명수·김성태·이두아·임영호·황우여 의원 발의) 7
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강석호·조진래·안형환·노철래·박대해·이춘식·조원진·여상규·김장수·박준선·정옥임 의원 발의) 7
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강용석·박선영·신상진·김정권·황우여·김혜성·김을동·정영희·노철래·윤상일·정하균 의원 발의) 7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김용구·임동규·정영희·김성수·박대해·노철래·김태원·정진섭·이인기·김성희 의원 발의) ... 8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11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11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 11
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 11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혜성·유승민·권영진·유성엽·김영진·송영선·김용태·황우여 의원 발의) 11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혜성·유승민·권영진·유성엽·김영진·송영선·김용태·황우여 의원 발의) 11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조승수·유성엽·정희수·이상민

	· 김춘진 · 정수성 · 김창수 · 임영호 · 김용구 · 류근찬 · 김을동 의원 발의)	11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조승수 · 유성엽 · 정희수 · 이상민 · 김춘진 · 정수성 · 김창수 · 임영호 · 김용구 · 류근찬 · 김을동 의원 발의)	11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일 의원 대표발의)(윤상일 · 조정식 · 노철래 · 김재윤 · 김효재 · 강길부 · 양승조 · 이명수 · 신낙균 · 김정권 · 이은재 의원 발의)	11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배영식 · 윤영 · 정갑윤 · 유정현 · 나성린 · 조진래 · 신지호 · 김영선 · 전여옥 의원 발의)	11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배영식 · 윤영 · 정갑윤 · 유정현 · 나성린 · 조진래 · 신지호 · 김영선 · 전여옥 의원 발의)	11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노철래 · 김태원 · 이종혁 · 이인기 · 김효재 · 권택기 · 권영진 · 최경희 · 정두언 의원 발의)	11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노철래 · 김태원 · 김효재 · 이종혁 · 최경희 · 이인기 · 권택기 · 권영진 · 정두언 의원 발의)	12
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진영 · 유정현 · 윤상일 · 신지호 · 이명수 · 김소남 · 안효대 · 박대해 · 임동규 의원 발의)	12
2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현경병 · 김소남 · 안상수 · 정해결 · 이해봉 · 최연희 · 황우여 · 김성수 · 임해규 · 원희목 · 조승수 · 김태원 · 이윤석 · 안효대 · 이춘식 · 나경원 · 황영철 · 조진형 · 박보환 · 권영길 의원 발의)	12
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 · 유기준 · 심재철 · 안상수 · 이진복 · 김금래 · 이한성 · 김성태 · 백성운 · 이정선 의원 발의)	14
2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이정현 · 이명규 · 정두언 · 신성범 · 김성조 · 정갑윤 · 김정권 · 조진래 · 유정현 · 김태원 · 신지호 · 김소남 의원 발의)	14
2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박주선 · 조영택 · 최영희 · 전해숙 · 박기춘 · 문학진 · 김상희 · 김진애 · 박은수 · 홍재형 의원 발의)	14
2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김성수 · 김재윤 · 박은수 · 홍재형 · 김영진 · 강기정 · 조경태 · 서갑원 · 강창일 의원 발의)	14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유기준 · 이윤성 · 고흥길 · 정의화 · 현경병 · 김정훈 · 유정현 · 안효대 · 임동규 · 김태원 · 박대해 · 정수성 · 이종혁 의원 발의)	14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최재성 · 양승조 · 전현희 · 전해숙 · 송영길 · 박은수 · 최영희 · 이광재 · 김성순 의원 발의)	15
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의원 발의)	15
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정옥임 · 허원제 · 조해진 · 김학용 · 이화수 · 김성태 · 신영수 · 이범래 · 나성린 · 김옥이 · 배은희 · 김소남 의원 발의) · 15	
3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 · 조경태 · 박준선 · 이윤석 · 권영세 · 김성희 · 차명진 · 이애주 · 김소남 · 나성린 의원 발의)	15
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용구 · 임영호 · 김창수 · 오제세 · 권선택 · 이용희 · 박상돈 · 유성엽 · 김을동 의원 발의)	16
3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이해봉 · 조경태 · 김을동 · 김세연 · 손숙미 · 차명진 · 이균현 · 이종혁 · 정갑윤 의원 발의)	16
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재균 · 이윤석 · 강운태 · 조승수 · 이시중 · 주승용 · 양승조 · 우윤근 · 김재윤 의원 발의)	16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유기준·정미경·장윤석·정희수·최연희·조원진·이한성·노철래·권성동 의원 발의) 16
3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김충환·한선교·유일호·나성린·이철우·이종혁·정미경·이정선·강성천·배은희·김장수·이한성·주호영·이진복·이군현·조해진·주광덕·정병국 의원 발의) 16
4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신지호·유기준·이한성·신상진·나성린·조전혁·김성태·권영진·이경제·정양석·이해봉 의원 발의) 16
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16
4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정희수·이성현·박대해·이해봉·김학송·황우여·황영철·조윤선·정병국 의원 발의) 16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신학용·김재윤·김우남·이윤석·천정배·최철국·이미경·송민순·최규성·김영환·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 17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김성수·김충환·나성린·박종희·손범규·신영수·윤석용·윤영·이성현·이인기·이춘식·이한성·정갑윤·정해걸·홍정욱 의원 발의) 17
4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강기갑·강석호·김성수·김세연·김영진·김우남·김재윤·김춘진·박종희·박준선·손범규·유기준·유성엽·유승민·이광재·이한성·이화수·정병국·최연희·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17
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조윤선·우제창·이명수·유기준·김재윤·이정선·임영호·안상수·권경석·송민순 의원 발의) 17
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48.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상민·류근찬·임영호·박선영·이진삼·이재선·최영희 의원 발의) 17
4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 17
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이명수·권경석·조진형·김소남·윤상일·김희철·박준선·강성천·이두아·김유정 의원 발의) 17
51.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훈·이한성·황진하·구상찬·김충환·권영세·이범관·배은희·이명규·이경제·황우여·조진형·강명순·권경석·김성희·이주영·박종근·안홍준·김기현·이화수 의원 발의) 19
52.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문희상·문학진·원혜영·이석현·최규식·이윤석·강성종·양승조·박은수·백재현·전병헌·최재성·박선숙·김재균·김충조 의원 발의) 19
53.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5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송영선·김성곤·이경제·강창일·정진섭·이재선·이춘식·신상진·김성수·신성범·황영철·조윤선·이애주·김금래·강명순·최병국·강길부 의원 발의) 19
55.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김세연·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정·박순자·박우순·손범규·송훈석·안상수·원희룡·윤영·이사철·이철우·정수성·정해걸·정희수·조진래·최연희·허천·황진하 의원 발의) 19
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22
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조진래·

신지호 · 정수성 · 김정훈 · 이한성 · 박대해 · 정갑윤 · 김소남 · 이범래 의원 발의) 22

58.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장세환 · 이종걸 · 양승조 · 유선호 · 이용섭 · 강창일 · 최규성 · 이찬열 · 주승용 · 최재성 · 최규식 의원 발의) 22

5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춘진 · 송영길 · 양승조 · 이시중 · 최문순 · 박은수 · 변재일 · 강창일 · 김영록 의원 발의) 22

6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임영호 · 유기준 · 한선교 · 임동규 · 김태원 · 김소남 · 안상수 · 손범규 · 박보환 · 김충환 · 김성수 의원 발의) 22

61.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강기갑 · 권영길 · 이정희 · 홍희덕 · 박은수 · 양승조 · 유성엽 · 유원일 · 이한성 의원 발의) 22

62.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박은수 · 최철국 · 유선호 · 양승조 · 안규백 · 조정식 · 전현희 · 노영민 · 장세환 · 최규성 의원 발의) 23

63.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 · 강기갑 · 곽정숙 · 권영길 · 김성곤 · 이정희 · 전혜숙 · 조승수 · 최문순 · 홍희덕 의원 발의) 23

6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 · 이미경 · 최문순 · 박은수 · 강기정 · 강창일 · 김성곤 · 이용섭 · 오제세 · 조정식 · 홍재형 · 김효석 · 전병헌 · 노영민 · 신낙균 · 유원일 · 박기춘 · 박영선 · 김상희 · 김희철 의원 발의) 24

6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 · 강기갑 · 곽정숙 · 권영길 · 김상희 · 김재운 · 김희철 · 송민순 · 송영길 · 유성엽 · 유원일 · 최재성 · 홍재형 · 홍희덕 의원 발의) 24

6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 · 강기갑 · 곽정숙 · 김상희 · 김영진 · 김희철 · 문국현 · 송민순 · 백원우 · 이용경 · 이정희 · 최문순 · 최영희 · 홍재형 · 홍희덕 의원 발의) 24

6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 · 김성순 · 홍장표 · 유성엽 · 김종률 · 김영진 · 김성태 · 김충조 · 고승덕 · 김소남 · 이애주 · 유재중 · 김성수 · 안상수 · 조원진 의원 발의) 24

68. 警察大學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최규식 · 윤상일 · 신지호 · 이명수 · 김소남 · 박대해 · 서병수 · 안효대 · 이인기 · 임동규 · 김성태 · 이한성 · 정희수 · 김혜성 · 전혜숙 의원 발의) 24

6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상민 · 이미경 · 이한성 · 권경석 · 신성범 · 강명순 · 신상진 · 황우여 · 윤영 의원 발의) 24

7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7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임동규 · 유성엽 · 고승덕 · 유정현 · 안효대 · 진영 · 윤상일 · 박대해 · 정수성 의원 발의) 24

72.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전현희 · 양승조 · 강창일 · 최철국 · 김부겸 · 이춘석 · 주승용 · 박은수 · 김낙성 의원 발의) 24

73.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최철국 · 양승조 · 강창일 · 최문순 · 박주선 · 장세환 · 노영민 · 강기정 · 전병헌 의원 발의) 24

74. 戰鬥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김소남 · 신지호 · 김세연 · 이명규 · 정두언 · 신성범 · 이인기 · 최구식 · 김성조 · 김태원 의원 발의) 24

75.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고승덕 · 권선택 · 임두성 · 김옥이 · 원희목 · 안홍준 · 손숙미 · 유정현 · 이해봉 의원 발의) 26

76.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성수 · 김금래 · 신지호 · 이해봉 · 이명수 · 이인기 · 원희목 · 장광근 · 김낙성 · 김정권 의원 발의) 26

77.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조문환 · 김학송 · 정해걸 · 이사철 · 조해진 · 노철래 · 김을동 · 김태원 · 원희룡 의원 발의) 26

78.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윤상일 · 김충조 · 정수성 · 신지호 · 진영 · 안효대 · 고흥길 · 김정권 · 김소남 · 박대해 의원 발의) 26

7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장수·이정선 김학송·안효대·황영철·안형환·원희목·김정권·김성수 의원 발의) 26

8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강창일·김우남·최인기·김태원·윤상현·홍재형·최규식·유성엽·양승조·이인기·김상희·김성곤·조윤선·김종률·우윤근·김효석·노영민·서갑원·허태열·김재균·강기정·김소남·이화수·이해봉 의원 발의) 28

8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류근찬·박은수·최철국·임영호·이명수·박진·이상민·박선영·원희목·권영세 의원 발의) 28

8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우남·신학용·김성식·이한성·이종혁·유승민·주광덕·유성엽·박준선·최연희·조승수·정해걸·신상진·이두아·우제창·임동규·김성태·김성수·이화수·정병국·강석호·원희목·허태열·황우여·김재윤·손범규 의원 발의) 28

8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이경제·정갑윤·조진래·권영진·이진복·김세연·권경석·나경원·성운환 의원 발의) 28

8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권경석·안홍준·김정권·신영수·최구식·조진래·이군현·박희태·김재경 의원 발의) 28

8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한성·김용구·임영호·박상돈·김창수·김을동·양승조·권선택·이은재 의원 발의) 28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석·김성순·강운태의원 발의) 30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희·김세연·박대해·박민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 30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 30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김무성·홍영표·이찬열·송영선·유성엽·김재윤·안민석·오제세·박선숙·신낙균·김영진·이성현 의원 발의) 30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유성엽·강석호·유기준·공성진·김효재·황우여·황진하·임해규·김용구·전여옥 의원 발의) 30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걸·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 35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안경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기국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률안 9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정을 고려해서 의사일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사사안별로 묶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권경석·김소남·김성조·김재경·김충조·김학송·문학진·박지원·박우순·박준선·백원우·

우윤근·이명규·이용섭·장세환·전혜숙·정의화·홍영표 의원 발의)

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태원·이한성·유기준·권영진·이해봉·신지호·박대해·이명수·김성태·이두아·임영호·황우여 의원 발의)
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강석호·조진래·안형환·노철래·박대해·이춘식·조원진·여상규·김장수·박준선·정옥임 의원 발의)
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강용석·박선영·신상진·김정권·황우여·김혜성·김을동·정영희·노철래·윤상일·정하균 의원 발의)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김용구·임동규·정영희·김성수·박대해·노철래·김태원·정진섭·이인기·김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안경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훈장의 서훈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투에 참가한 경우 외에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까지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서훈요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책임운영기관이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관리체계, 회계방식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관장의 기관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 범위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요약 1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비서관 및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조성 및 운영관리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직대통령 서거 시에 배우자에 대한 예우기간의 확대 문제는 전직대통령 관련 추모행사 등 각종 사회활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대변화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전직대통령의 묘역은 국민의 추모공간이자 정서함양 공간임을 고려할 때 안장장소와 관계없이 묘지 운영관리 등을 국가 지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인기 의원, 정병국 의원, 김정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의원안은 보국훈장 수여대상을 사회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로 확대하여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보국훈장이 보다 용이하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해당지역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군인 및 군무원의 서훈에 비추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가안전보장 공적으로 일반공무원 등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가 있고 수여대상 확대에 따른 훈장의 영예성 저하 우려 의견 등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국 의원안은 1981년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변경된 사립대학 학생군사교육요원을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고 김정 의원안은 군인 및 군무원을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모두 근정훈장의 서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근정훈장 서훈 범위의 확대 문제는 근정훈장의 과다 수여로 인해서 서훈의 영예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 등 포상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제출안은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

무수행 공적을 무공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고도의 긴장과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접적지역에서 경계임무 등을 수행하다 희생된 경우도 무공훈장 서훈 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투에 준하는 공적과 비전투 공적과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수정 및 기관 유형 재분류,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의 법적 근거 설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선별적 적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손익·자본 계정 간 융통 허용,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 유예의 특례 설치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중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선별 적용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적용할 기관의 선별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손익·자본 계정 간 융통 허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유정현 의원안은 우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면제, 종합평가 결과와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기준의 연계 의무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면제 내용은 현재 유사한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중에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종신, 평생 하도록 하는 그 취지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년으로 적용되느냐……

그걸 보면 운전사와 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능직이고 또 그냥 고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급을 분명히 할 필요가……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위라면 사실 1급부터 2급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이 8급인지 9급인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년 2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로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재개정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다만 비서관 등 임용기한 이것은 시행령 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집어넣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시행을 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거든요.

○**고흥길 위원** 지금 시행령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임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령에 제대로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흥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건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급인지가 안 되어 있구면요, 시행령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직대통령 서거 후에 배우자의 비서관은 별정직공무원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별정직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법으로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리고 임용기간이 시행령 위임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나중에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는 몇 급인데 나는 왜 이거나 하는 식으로 이의

를 제기할 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경률** 다음, 김정권 위원!

○**김정권 위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권 의원입니다.

개정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우자의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것을 아까 설명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직대통령 묘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묘지의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다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는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전직대통령 예우라는 측면에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국가보존묘지로 모시 게 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보존묘지1호로 김해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법으로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가보존묘지1호로 모신 법이 장사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장사법의 시행령에 이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인데, 이걸 법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법에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국가보존묘지1호를 만들었을 때 장사법의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가가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권 위원**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훼손사건도 있었고 또 전직대통령을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묘역 경비 이런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묘지에 대한 운

영관리 주체는 저는 오히려 행안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국가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 봤는데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직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직대통령의 추모재단의 예산으로 또는 기념사업이라든지 묘역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보존묘지 또는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다시 34조 4항에 보면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국가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끝났습니까?

○**김정권 위원** 예.

○**위원장 안경률** 고흥길 위원님!

○**고흥길 위원** 이 문제가 나왔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행안부가 전직대통령 묘역을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립현충사 이거 같은 경우에 보훈처가 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고흥길 위원** 그런데 현충사에 들어가 있는 묘역을 어떻게 행안부가 관리를 하게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국가 관리라는 의미지요.

○**고흥길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그런 것도 하나 결정을 해 두는 게 좋겠어요. 이왕 고칠 때 법안심사소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생가라든가 생가 주변의 토지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또는 기념관이 라든가 이게 전직대통령을 붙여 가지고 하게 되면 한없이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물론 논의가 되겠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연구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예산을 하게 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무슨 사적 관리라든가 또는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해 가지고 몇십억씩 심지어 몇백억까지 이렇게 들어갈 텐데, 기념관 도서관 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어떤 지침이나 정부의 방침 같은 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미리 새로운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방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현행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우선 자료사업, 교육사업, 기념관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약간의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틀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의사결정을 다음에 또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사일정을 전부 논의 하고 일괄해서 나중에 결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손숙미 의원 발의)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

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혜성·유승민·권영진·유성엽·김영진·송영선·김용태·황우여 의원 발의)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혜성·유승민·권영진·유성엽·김영진·송영선·김용태·황우여 의원 발의)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조승수·유성엽·정희수·이상민·김춘진·정수성·김창수·임영호·김용구·류근찬·김을동 의원 발의)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조승수·유성엽·정희수·이상민·김춘진·정수성·김창수·임영호·김용구·류근찬·김을동 의원 발의)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일 의원 대표발의)(윤상일·조정식·노철래·김재윤·김효재·강길부·양승조·이명수·신낙균·김정권·이은재 의원 발의)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배영식·윤영·정갑윤·유정현·나성린·조진래·신지호·김영선·전여옥 의원 발의)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배영식·윤영·정갑윤·유정현·나성린·조진래·신지호·김영선·전여옥 의원 발의)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노철래·김태원·이종혁·이인기·김효재·권택기·권영진·최경희·정두언 의원 발의)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노철래·김태원·김효재·이종혁·최경희·이인기·권택기·권영진·정두언 의원 발의)

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진영·유정현·윤상일·신지호·이명수·김소남·안효대·박대해·임동규 의원 발의)

2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현경병·김소남·안상수·정해걸·이해봉·최연희·황우여·김성수·임해규·원희복·조승수·김태원·이윤석·안효대·이춘식·나경원·황영철·조진형·박보환·권영길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안경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24항까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기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기간에도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별정직과 계약직공무원의 질병휴직을 허용하는 등 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남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난임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그 공무원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공무원들의 난임 치료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 법령에서 이미 난임치료의 경우에 질병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심사 시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정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폐지와 복수국적자의 보안·기밀, 외교 분야 등 임용 제한 또 일반 승진시험 대상 확대, 육아휴직 결원보충 개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질병휴직 허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승진시험 대상 확대 내용은 그 요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질병휴직 허용에 대해서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 다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주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세연 의원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인사관리상의 우대 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대상으로서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의 정책 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우대 정책이 채용 할당 내지 의무 고용 형식으로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처의 채용 부담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개정법률안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고 기능 10급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계급 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 기능인력의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며 기능직공무

원의 사기 증진 및 전문 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윤상일 의원께서 제출하신 법안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입 제도 허용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제도 적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전입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무가 특정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전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전체 공무원법 체계에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소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명예퇴직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경력직공무원과의 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년 개념이 없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정년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예퇴직제도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안효대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공무원법상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전문직채용'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채용'의 용어 변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직채용'이라는 용어를 대체 용어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임동규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별로 분기마다 월별 연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공무원 휴가 활용 촉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김태원 의원께서 제출하신 법안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안경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용 당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되었어야 함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추후에 임용결격자로 확인되어 퇴직 조치된 인원에 대한 특별채용, 개정연금법의 소급 적용을 통한 퇴직보상금 추가 지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99년과 2008년 퇴직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특별채용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는 점 또 신원조회 및 퇴직발령 통보 미흡 등에 대해서 국가 등의 과실이 있음에도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이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공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남 위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서 난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체 부부 여덟 쌍 중 한 쌍이 난임 부부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론에 따르면 난임 치료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로 길고 개인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직을 통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임 휴직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

명이 있었습니다다는 이미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국가공무원법에 또 다시 집어넣으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소남 위원** 제가 개정을 발의한 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임용규칙 중 질병사유 난임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부처 내규에 정해질 경우에는 난임휴직의 허가 여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휴직 허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 장려 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자체 연구가 아닌 무엇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현행 질병휴직제도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난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공무원법에 이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별도 신설해도 그렇게 실익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소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위원장 안경률** 김소남 위원 끝났습니까?

○**김소남 위원** 예.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회부는 다음 의사일정 대체토론을 마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유기준·심재철·안상수·이진복·김금래·이한성·김성태·백성운·이정선 의원 발의)

2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이정현·이명규·정두언·신성범·김성조·정갑윤·김정권·조진래·유정현·김태원·신지호·김소남 의원 발의)

2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

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2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성수·김재운·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유기준·이윤성·고홍길·정의화·현경병·김정훈·유정현·안효대·임동규·김태원·박대해·정수성·이종혁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임 의원, 권경석 의원, 조정식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임 의원안은 민방위사태의 정의를 전시·사변·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그리고 국가적 재난 등으로 구체화하

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민방위 정책과 계획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방위대 동원 시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권경석 의원안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이 날 민방공 대비훈련, 테러 대비훈련 등을 실시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방위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공로자에 대한 포상은 훈련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 정부 포상은 상훈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안은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으로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도모와 법문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안은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 및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중뿐만 아니라 훈련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또는 훈련 후 귀가하는 도중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는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며 다만 훈련 장소로의 이동 또는 귀가 시의 전제 조건인 순차적인 경로와 방법은 그 판단이 다소 불분명하여 보상금 등의 결정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정부 및 이인기 의원이 각각 제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출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교육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양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관리주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서 안전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권한도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기관

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용낭비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의 범위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인기 의원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6세 미만의 영유아용 놀이기구를 3종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보육시설의 신설과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안전 차원보다는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동법에 규정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하신 것과 관련하여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상정된 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절차는 다음 의사일정 대체토론을 마친 후 함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최재성·양승조·전현희·전혜숙·송영길·박은수·최영희·이광재·김성순 의원 발의)

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 의원 발의)

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정옥임·허원제·조해진·김학용·이화수·김성태·신영수·이범래·나성린·김옥이·배은희·김소남 의원 발의)

3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조경태·박준

선·이윤석·권영세·김성희·차명진·이애주·김소남·나성린 의원 발의)

- 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오제세·권선택·이용희·박상돈·유성엽·김을동 의원 발의)
- 3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해봉·조경태·김을동·김세연·손숙미·차명진·이균현·이종혁·정갑윤 의원 발의)
- 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재균·이윤석·강운태·조승수·이시종·주승용·양승조·우윤근·김재윤 의원 발의)
-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유기준·정미경·장윤석·정희수·최연희·조원진·이한성·노철래·권성동 의원 발의)
- 3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김충환·한선교·유일호·나성린·이철우·이종혁·정미경·이정선·강성천·배은희·김장수·이한성·주호영·이진복·이균현·조해진·주광덕·정병국 의원 발의)
- 4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신지호·유기준·이한성·신상진·나성린·조전혁·김성태·권영진·이경재·정양석·이해봉 의원 발의)
- 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4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정희수·이성현·박대해·이해봉·김학송·황우여·황영철·조윤선·정병국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42항까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1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요약보고서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원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총 12건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은재 의원안, 정옥임·이명수·안경률·장광근·성윤환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들 6건의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은재 의원안과 정옥임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성윤환 의원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로서 공통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부당,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발생 등의 경우를 규정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안경률 의원안과 장광근 의원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서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임기 전의 활동과 관련한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네거티브 방식으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환청구사유의 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환 청구사유를 규정할 경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주민소환이 결국에는 사법적 절차화되어서 당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지역이기주의 또는 정치적 견해차에 의한 정쟁,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 등에 의해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주민소환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청구사유 제한에 따른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백원우 의원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인정시점을 현행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공표일 현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통해 전년도 12월 31일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의 경우에는 소환투표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박은수 의원안은 장애인의 주민소환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안은 인구 500만 명 미만인 시도의 단체장에 대한 소환청구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10%에서 12.5%로 상향조정하고, 모든 주민소환투표의 확정 및 개표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인구 500만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개표 및 투표요건 완화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투표결과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지호 의원안은 소환청구서명의 위임·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일정 수의 서명을 표본추출해서 실제 서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통해 부정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의 서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투표,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안은 '부녀단체'라는 용어를 '여성단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안은 주민소환청구와 관련하여 부정 서명자와 부정 투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소환투표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 서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에 주민소환제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

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다음 의사일정과 합해서 일괄해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신학용·김재윤·김우남·이윤석·천정배·최철국·이미경·송민순·최규성·김영환·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김성수·김충환·나성린·박종희·손범규·신영수·윤석용·윤영·이성현·이인기·이춘식·이한성·정갑윤·정해걸·홍정욱 의원 발의)

4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강기갑·강석호·김성수·김세연·김영진·김우남·김재윤·김춘진·박종희·박준선·손범규·유기준·유성엽·유승민·이광재·이한성·이화수·정병국·최연희·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조윤선·우제창·이명수·유기준·김재윤·이정선·임영호·안상수·권경석·송민순 의원 발의)

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상민·류근찬·임영호·박선영·이진삼·이재선·최영희 의원 발의)

4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

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이명수·권경석·조진형·김소남·윤상일·김희철·박준선·강성천·이두아·김유정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이주 국민에게도 주민등록을 허용하여 국내 경제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의사일정 제43항부터 50항까지 계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1년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권한 이양 및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효대 의원, 이계진 의원, 이인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효대 의원안은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행정안전부는 신청자에 한하여 점자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바 모든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일부 시각장애인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만을 두

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계진 의원안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거소하는 지역’에서 본인의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군인의 주민등록지를 거소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군부대의 위치와 군 주둔 병력 등 군사 보안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안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시 신청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제출안은 국외이주 국민의 경우에도 국내 장기체류 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체 경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자주민증이 보안 문제, 통합 신분증으로서의 변경 가능성, 경신에 따른 소요재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권선택 의원과 김충조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선택 의원안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3개월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국민의 인감증명 사용권을 제약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과 과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폐지했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충조 의원안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인(拇印)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현재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은 이러한 대리인의 무인을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연구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현행 국고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의 일몰제 규제방침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가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회부 결정은 다음 의사일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훈·이한성·황진하·구상찬·김충환·권영세·이범관·배은희·이명규·이경재·황우여·조진형·강명순·권경석·김성희·이주영·박종근·안홍준·김기현·이화수 의원 발의)

52.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문희상·문학진·원혜영·이석현·최규식·이윤석·강성종·양승조·박은수·백재현·전병헌·최재성·박선숙·김재균·김충조 의원 발의)

53.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

원 대표발의)(박상은·송영선·김성곤·이경재·강창일·정진섭·이재선·이춘식·신상진·김성수·신성범·황영철·조윤선·이애주·김금래·강명순·최병국·강길부 의원

발의)

55.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김세연·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정·박순자·박우순·손범규·송훈석·안상수·원희룡·윤영·이사철·이철우·정수성·정해걸·정희수·조진래·최연희·허천·황진하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5항까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기존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망라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박상은 의원님께서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5항 법률안을 발의하신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가지고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한나라당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은 분단 6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느 낙후지

역보다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이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여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국토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영향을 받아서 지원법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으로는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기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 제명을 민생법안의 성격 규정을 위해서 기존 접경지역지원법이 아닌 '접경지역 지원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하위법이 아닌 동법 개념으로 만들었고,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위의 법률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전반을 총괄하는 접경지역정책회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 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각 중앙부처 장관 및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기에 각종 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근거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 국고보조율을 임의규정에서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서 국고보조율을 8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접경지역 내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접경지역 입주기업은 접경지역 및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

는 공산품·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동 개정안이 본 취지에 문제가 없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한기호 의원님 제안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꿨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4항 법률안을 발의하신 박상은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낙후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선박 건조 등 해상교통을 위한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분단 상황에 기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의 접경지역지원법상에 특히 백령도나 연평도 등 NLL 인접 접경도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접경지역지원법 제13조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존의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접경지역 중 육상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비용 지원을 조항에 포함한 반면 해상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선박 건조, 선착장, 터미널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본 개정안을 통하여 도서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선박 건조 등 해상교통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삼 강조드리는데 바 도서지역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현저히 취약한 열악한 환경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본 개정안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박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부처 및 공공기관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서 과천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특례와 과천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또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해서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후 과천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과천청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과천시의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의원 안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으로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행 시에 국비 보조비율을 80% 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접경지역 관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

하도록 하는 등 재원 확보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 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국비보조율 80% 이상 의무화와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안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의 범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서 지원이 분산하게 되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은 의원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접경지역에 대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육지 접근성과 관광객의 도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육지에 있는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한기호 의원안은 접경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사업 등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

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조진래·신지호·정수성·김정훈·이한성·박대해·정갑윤·김소남·이범래 의원 발의)

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장세환·이종걸·양승조·유선호·이용섭·강창일·최규성·이찬열·주승용·최재성·최규식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58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유인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정숙 의원, 장제원 의원, 장세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정숙 의원 안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면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위원회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위원의 면직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는 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부당한 차별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 안은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위원 및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 파견 시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시 국회 동의 절차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및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위원회의 직원도 공무원이므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단 설립은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세환 의원 안은 진실규명 이후 후속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단 설립의 타당성, 국가 재정 부담, 재단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춘진·송영길·양승조·이시종·최문순·박은수·변재일·강창일·김영록 의원 발의)

6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임영호·유기준·한선교·임동규·김태원·김소남·안상수·손범규·박보환·김충환·김성수 의원 발의)

61.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이

정희·홍희덕·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 의원 발의)

62.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박은수·최철국·유선호·양승조·안규백·조정식·전현희·노영민·장세환·최규성 의원 발의)

63.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성곤·이정희·전혜숙·조승수·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63항까지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의원발의 입법안이기에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상희 의원, 곽정숙 의원, 이춘석 의원, 유원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경범죄처벌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경범죄의 종류를 수정·보완하며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고처분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 비밀 출교습 및 장소 제공 그리고 뱀 등 진열행위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각 삭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당포가 거의 없어진 현실, 사고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도 사육하는 실태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출판물의 부당 게재 등, 단체가입 강청,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 조작, 굴뚝 등 관리 소홀 그리고 정신병자 감호 소홀의 규정 사항은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각각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의 대부분이 형법의 보충적, 예방적 성격으로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유사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삭제하는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벌 규정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제 요구하기’와 같은 행위는 처벌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원일 의원안은 불안감 조성 규정 중 공공장소에서의 험악한 문신 노출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삭제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하여 혐오감을 준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곽정숙 의원안은 정신병자 감호 소홀을 삭제하고 있는데 보호자 등이 정신병자를 고의로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기죄로 처벌하면 되고 기타의 경우까지 국가가 형벌권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안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바 이는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안은 공동주택에서 지나치게 큰 층간 소음·진동을 오랫동안 과도하게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에

의한 층간소음은 동법 인근소란 등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이미경·최문순·박은수·강기정·강창일·김성곤·이용섭·오제세·조정식·홍재형·김효석·전병헌·노영민·신낙균·유원일·박기춘·박영선·김상희·김희철 의원 발의)

6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상희·김재윤·김희철·송민순·송영길·유성엽·유원일·최재성·홍재형·홍희덕 의원 발의)

6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김상희·김영진·김희철·문국현·송민순·백원우·이용경·이정희·최문순·최영희·홍재형·홍희덕 의원 발의)

6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김성순·홍장표·유성엽·김종률·김영진·김성태·김충조·고승덕·김소남·이애주·유재중·김성수·안상수·조원진 의원 발의)

68. 警察大學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최규식·윤상일·신지호·이명수·김소남·박대해·서병수·안효대·이인기·임동규·김성태·이한성·정희수·김혜성·전혜숙 의원 발의)

6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

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

7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임동규·유성엽·고승덕·유정현·안효대·진영·윤상일·박대해·정수성 의원 발의)

72.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전현희·양승조·강창일·최철국·김부겸·이춘석·주승용·박은수·김낙성 의원 발의)

73.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최철국·양승조·강창일·최문순·박주선·장세환·노영민·강기정·전병헌 의원 발의)

74. 戰鬪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소남·신지호·김세연·이명규·정두언·신성범·이인기·최구식·김성조·김태원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74항까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치안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규정하고 단체의 중앙·지방 간 조직계통 명칭을 ‘본부, 지부 및 지회’에서 각각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하여 지역단위 조직의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순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 강명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4건의 개정안은 재개발, 노사분규 현장 등에서 경비업자, 용역업체 등의 무분별한 인력 동원과 이를 통한 폭력·상해 등 불법행위의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경비원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순 의원안과 강명순 의원안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 경봉 및 분사기로 한정하고 또한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경비원들이 재개발 현장 등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 쇠파이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특수경비원 등은 총기류 등의 무기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의원안, 유원일 의원안 및 강명순 의원안은 노사분규 사업장, 재개발사업장 등의 경비업무는 경비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분규 사업장의 사용자가 경비원 등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현장 등에서 무허가 용역업체들이 동원한 용역인력에 의한 상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가 문제시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분규의 발생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의원안과 유원일 의원안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 규정이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파산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원의 업무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경찰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재학 중 국고에서 지원된 학비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학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주요 부분인 수업료, 기숙사비 등이 상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대학생은 재학 중 학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는 만큼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이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복수국적자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보안·정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및 이인기 의원이 각각 제출·발의한 2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제출안은 경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경우회 조직의 명칭을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경우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경우회의 명칭 변경을 통해 경우회의 성격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 시·도경우회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윤근 의원안은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을 습득한 경우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 등의 관리자는 습득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유실물의 습득자는 그 물건회복의 청구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경우에는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김재균 의원안은 경찰관서장, 선박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유실물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유실물관리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투경찰대의 근무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1월 2일 제14차 균형법 개정으로 근무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이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고승덕·권선택·임두성·김옥이·원희목·안홍준·손숙미·유정현·이해봉 의원 발의)

7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성수·김금래·신지호·이해봉·이명수·이인기·원희목·장광근·김낙성·김정권 의원 발의)

7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조문환·김학송·정해걸·이사철·조해진·노철래·김을동·김태원·원희룡 의원 발의)

7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윤상일·김충조·정수성·신지호·진영·안효대·고홍길·김정권·김소남·박대해 의원 발의)

7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장수·이정선·김학송·안효대·황영철·안형환·원희목·김정권·김성수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79항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 시에도 법률안 상정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 79항의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될 법안들과 관련된 그런 법안이기에 때문에 같이 심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임동규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4월 10일 발의한 김소남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총포 등에 대하여 유지되어 왔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UN총기류규제의정서에 따른 입법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포 등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연극 등에 사용되는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이는 현재도 영화 촬영 후 반출을 조건으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을 외국 임대업자로부터 일시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서명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부속의정서 중 하나인 총기류규제의정서에 따라 총기류의 국제적 유통 통제, 총기류 관련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행위 처벌, 총기류 식별표지를 위·변조하는 행위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10월 총기류규제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현재까지 9년이 경과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와 의정서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의정서에 따른 입법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0년 7월 1일 발의한 김소남 의원안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장난감용 꽃불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를 통한 구매와 이용을 유도할 경우 장난감용 꽃불류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임동규 의원안은 금속 이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물건도 주 용도가 흉기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금속 도검이 제외되는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안은 총포 등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소지자로 하여금 총포 등을 30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총포 등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소지자에게 총포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아 개별 사안별로 제출 기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 11월 9일 발의한 김소남 의원은 폭행, 상해 등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3년 동안 2회 이상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총포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력행위자인 경우에는 벌금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잠재적인 폭력성향으로 인한 총기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폭력 범죄 전과자에 의한 총기사고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남 위원** 경찰청장님께 간단히 여쭙 보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기사고자 범죄경력 현황을 보면 약 70%가 폭력·상해 범죄 전과범으로 나타납니다. 또 현행법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총포의 소지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습 폭력 전과자에 대한 총포 소지 허가를 제한해서 이들 폭력 성향이 있는 전과자에 의한 일반 선량한 다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경률** 김소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미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의 법안과 앞으로 이어서 상정될 법안들은 대체토론을 마친 것도 있지만 대체토론을 할 부분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강창일·김우남·최인기·김태원·윤상현·홍재형·최규식·유성엽·양승조·이인기·김상희·김성곤·조운선·김종률·우윤근·김효석·노영민·서갑원·허태열·김재균·강기정·김소남·이화수·이해봉 의원 발의)

8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류근찬·박은수·최철국·임영호·이명수·박진·이상민·박선영·원희목·권영세 의원 발의)

8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우남·신학용·김성식·이한성·이종혁·유승민·주광덕·유성엽·박준선·최연희·조승수·정해결·신상진·이두아·우제창·임동규·김성태·김성수·이화수·정병국·강석호·원희목·허태열·황우여·김재윤·손범규 의원 발의)

8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이경재·정갑윤·조진래·권영진·이진복·김세연·권경석·나경원·성운환 의원 발의)

8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권경석·안홍준·김정권·신영수·최구식·조진래·이균현·박희태·김재경 의원 발의)

8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한성·김용구·임영호·박상돈·김창수·김을동·양승조·권선택·이은재 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부터 85항까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회 시작 초기에 서면으로 대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김유정 의원, 류근찬 의원, 황영철 의원, 최구식 의원, 이주영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안과 류근찬 의원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지원 업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유정 의원안이 소방지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류근찬 의원안은 119 등을 포함한 긴급전화와 주민신고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4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교대 근무제도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2010년 9월 말 현재 3교대 근무자는 전체 교대 근무자 2만 9294명 중 78%인 2만 2981명, 2교대 근무자는 나머지 22%인 6323명으로 전면적인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679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최구식 의원 안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 제한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주영 의원 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등 업무 수행 중에 화상 등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질병 연구, 진료 등을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 전문 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도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그 수요가 시도별로 전문 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 안은 현재 소방간부후보생의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용 시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2년간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 부서에 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간부후보생의 재난과 재해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관련 사항은 전공, 적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소방간부후보생의 임용 보직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 위원님!

○김정권 위원 황영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추어서 4교대 근무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또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3교대 근무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청장님, 현재 2교대와 3교대 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현재 3교대 근무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위원 78%라는 3교대 비율은 올해 총원된 2661명에다가 인력 재배치를 통한 2228명 이것을 3교대 인력 확충으로 잡아서 계산한 것이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김정권 위원 관서를 통폐합하고 출동 차량을 축소해서 억지로 3교대 비율을 이렇게 높여 가지고 잡은 것인데 실제 3교대 인력 확충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 그런 사항이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권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소방인력 총원 현황을 보면 6643명, 계획에 총원은 3440명으로 5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니까 부랴부랴 인력 총원에 나서서 2661명을 확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런 점도……

○김정권 위원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마는 사실은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권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정권 위원 총액인건비가 상정할 때 소방 3교대 인력을 별도로 상정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집행 우선순위에 배제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권 위원** 자치제도과에서 인력 상정을 하지만 교부세 산정할 때는 이게 총액으로 계상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도에서는 재정 수요가 급한 데 먼저 써 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3교대 인력 충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충원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다음 총액인건비에서 삭감하는 사후정산제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교부세 상정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권 위원** 이런 부분부터 분명하게 바로잡아서 예산이 소방인력 확충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청장님.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정권 위원** 4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총……

○**김정권 위원** 1만 명이 넘게 있어야 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1만 971명, 4017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정권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직이나 교정직 같은 유사 직무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은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체계상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경률** 김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

이춘석·김성순·강운태 의원 발의)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희·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김무성·홍영표·이찬열·송영선·유성엽·김재윤·안민석·오제세·박선숙·신낙균·김영진·이성현 의원 발의)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유성엽·강석호·유기준·공성진·김효재·황우여·황진하·임해규·김용구·전여옥 의원 발의)

(11시59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90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김충환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투표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선거인의 선거인 등록 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재외선거인 등의 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김충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충환 의원님께서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시면서 우리 재외교민들과 아주 접촉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몸소 체험해서 법안 개정안까지 내주셨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김영진 의원, 박준선 의원, 안경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충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재외선거 관련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의 투표 방법과 관련하여 김영진 의원안은 공관투표 이외에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추가하는 것이고 안경률 의원안과 박준선 의원안은 우편 투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우편 투표 또는 인터넷 투표가 도입될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 등에게 투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외에서 우편 투표 또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리투표, 매표행위 등 부정행위를 단속하거나 조사하는 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그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안경률 의원안, 김충환 의원안, 박준선 의원안은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김성곤 의원안

은 순회투표소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구역이 광활한 재외공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투표소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공관 이외에 투표소 설치를 자국의 영토 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국 독일 캐나다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관 이외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주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상 특권 면제가 적용되는 외교공관이 아닌 일반 시설물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부정행위 등의 단속 문제나 치안 확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재외투표 시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김성곤 의원안은 현재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인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6일간의 투표기간 운영이 가능하여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투표 시간이 오후 9시까지 연장될 경우 치안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야간 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님께서……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될 이 재외선거에서는 재외국민들이 직접 공관에 와서 투표하는 방식만이 인정이 되고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인정이 되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그렇습니

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재외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면적이 서울의 27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투표소는 베이징 대사관 한 곳뿐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외국공관 이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징 대사관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일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독일 등에서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땅은 넓은데 해당국의 규정상 추가투표소나 순회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대략 어느 나라, 몇 개국 정도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우편 투표만 채택하는 국가는 한 27개국이 됩니다. 공관 투표만 하는 데는 한 55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지금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일부가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몇 개국이에요, 인터넷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에스파냐……

○박대해 위원 에스파냐, 네덜란드 정도 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예.

○박대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터넷 투표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편 투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도가 재외국민들 참정권 보장 확대 그 목적인데 이것을 우편 투표제도를 하지 않고 대사관 한 곳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많은 시간, 경비 소요해 가면서 투표에 참여하겠느냐, 이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는 꼭 이번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선관위 사무차장 이종우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외선거가 도입이 되면서 정개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외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주권 행사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가 불가한 것 거기에 따른 부분, 그럼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더 우선으로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한적으로 공관이 미설치된 국가가 한 61개국이 있습니다. 검입국이지요, 거기하고 대만대표부, 그다음에 작전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파병 군인들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데는 제한적으로라도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경을 박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이번 모의투표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시지 않았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재외선거인 등록이 지금 현재 공관을 방문해서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편으로 등록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지금 현재로 가장 비근한 예는 일본의 영주권 2세대나 3세대 이런 부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보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등록이라든지 부모의 성명이라든지 최종 국내 거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청만 할 뿐이지 명부로서 등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편 투표로 왔을 때
는요.

그래서 공관 투표로 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필수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명부를 신청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모의투표에서 그런 부분이 노정이 되어 있
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 부분에 공관에 와서 등록하는
부분이 굉장한 불편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편으로 등록하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운
영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편 투표는 좀 공
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됩니다.

○**위원장 안경률**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김충환 의원님, 바쁘신데 또 설명까지 하시느
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편 투표 말이예요. 이게 지금 선거 투
표 방식이 비밀투표이고 또 직접선거인데 이게
과연 우편으로 비밀투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행법하
고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지금 우
편 투표는 사실상 우편 투표에 한계가 좀 있습니
다. 대리투표나 대표행위 이런 선거 부정에 취약
하다는 것이고 공정성 담보가 곤란하다 그리고
정확한 우편 송달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지
만 지금 겸임국일 경우에 공관이 없는, 최소한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한다면 공관이 겸임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나라, 한 60개국 거기에나 파병
군인들 그런 사람은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제
로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밀투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리투표도 할 수 있는 우편
투표라는 것은? 그러면 투표 이 상위법에는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우선적으

로 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 부분도 있지만
투표 편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종
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지금 해
외에 나가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겠지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선에서도 50만 표
에서 당락이 갈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편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부정선거가 될 수뿐이 없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참고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1개 공관에 재외국민 수가 한 2600명 정
도 됩니다. 그리고 재외 파병 군인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른 공관이
없으니까 겸임공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
문에 그런 편리는 최소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투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아
니냐 하는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
니다.

○**임동규 위원**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예.

○**위원장 안경률**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요.

○**이인기 위원** 오늘 법안 상정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경찰청장님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지금 법과 제도의 밖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되는 것을 전제해서 일부 학교에서도 학과
생겨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여러 전문기관에서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제도, 제도와 현실 이 갭을
우리가 좀 창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입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지금 세워 오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조사법 관계는 저희 퇴직 경찰관들을 활용한
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부처라든지 논의가 이견이 좀 있는
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나가고 이것을
세미나나 공청회나 또 다른 기회를 가져서 언론
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

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직 경찰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많은 경찰관들이 숙원으로 여기고 있는 이게 곧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경률**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충조 위원** 제가 아까 대체토론 한 것 지나쳤는데 지나간 것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경률** 예, 다 우리 단체장들이 계시니까 충분한 논의를……

○**김충조 위원** 행안부장관님, 아까 오늘 상정 법안 47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간에 잠깐 제가 이석을 하는 바람에 놓쳤는데 복잡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국가기관이 불법 부당하게 민간을 사찰해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을 지금 정부안대로 개정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도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고 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의혹 부분을 전부 나름의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리더기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축적이 되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 이것은 아예 기술적으로도 그것을 확실하게 막아 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도 확실하게 막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충조 위원** 예, 장관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재검토해 주셨고 또 이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도 갖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해서 아주 그건 상찬받아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고맙습니다.

○**김충조 위원**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일곱 가

지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성별, 생년월일 등등 네 가지를 보태고 그 이외에 혈액 등 에체트리(etceter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수속신청이 있는 경우에 추가 수록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충조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다 어떤 여유가 없도록, 하여튼 법에 의해서 그렇게 혈액을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닌 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인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는 이 두 가지 문구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법에 의해서는……

○**김충조 위원** 법규가 말이지요,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록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신청이 중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염려는 있을 수가 없다, 일용 그렇게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래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아예.

○**김충조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충조 위원** 그것 법으로 막을 생각 언제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최근에 했습니다.

○**김충조 위원** 최근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충조 위원**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 이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충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아예 법으로 못을 막아 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충조 위원** 제가 과문했네요. 모르고 있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 의혹을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기관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은 전

부 정리를 해 나가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물론입니다.

○**김충조 위원**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당초의 개정안대로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규범 명확성에 또 일탈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배치된다, 이러한 논란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장관께서 미리 예견을 하신 모양 같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경률** 김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원우 위원** 현안질의……

○**위원장 안경률** 아니, 이것 마치고 나서 하시지요. 다음 또 법안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차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2012년 재외국민투표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박대해 위원님 그리고 김태원 위원님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줄여 보면 첫째는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편투표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투표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문제가 집약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선관위에서 현장점검을 누차에 걸쳐서 세계 각국에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 현장에 가서 제가 선관위 직원들하고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이번 달에 2012년을 대비해서 선관위가 주도해 가지고 모의투표를 하는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때 선관위에서는 프로답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할 대책을,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

는 말씀을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선거법이나 정당법과 관련된 것은 주로 아마 양당이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경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 정개특위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정개특위에 가기 전에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 점검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서……

○**백원우 위원** 논의는 할 수가 있는데 뭐 의결하고 그러려면 정개특위로 가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경률** 의결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그 안을, 좀 구체적인 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법안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결·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

(12시24분)

○**위원장 안경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되 기탁금 중 연간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한 입법취지, 정치자금 제공의 적정성, 예상되는 부작용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 추진비로 사용될 수 있는 500억 원의 기탁금이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선관위에 기부된 후원금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국고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국회의원후원회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앞서 살펴본 기탁금 균등배분제도의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후원회 폐지는 일반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적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통로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후원회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후원회제도의 입법취지, 표현의 자유의 제한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경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라 그런 뜻으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바로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현안질의 하나만……

○위원장 안경률 예, 현안에 관해서……

○백원우 위원 현안에 관한 것 한두 개만 좀 여쭙 보겠습니다.

경찰청장님, G20 기간 중이나 그 앞서서 야간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은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G20 때 야간……

○백원우 위원 G20 이틀을 포함해서 그 앞서서 무슨 민중행동인가에서 시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야간집회와 관련해서 그것이 폭력으로 치달았던 사례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경찰청장 조현오 예, 11월……

○백원우 위원 관련되는 자료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다음에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연 사무관이라는 사람의 포켓수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9월 22일 회의 메모에 보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수집한 정보가 경찰청 이 모모에게 이렇게 수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22일 그 근방이면 경찰청 누구한테 이 정보가 갔는지를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백원우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지금……

○백원우 위원 아침에 보도된 건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서울신문 보도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원우 위원 예.

○경찰청장 조현오 서울신문 경찰청 출입기자한테 확인한 결과 보도내용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정보3분실 이성용 경위인데 복지부 담당입니다.

○백원우 위원 경찰청 이성용 경위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백원우 위원 경위? 하급직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네요?

○경찰청장 조현오 아니, 보고라기보다도 이성용 경위가 08년 7월경에 원충연으로부터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복지부 청사 1층……

○백원우 위원 이첩을 시킨 건가 보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부 담당이면 그 앞에 나오는 식약청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이 경찰청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관련되는 내용들, 당시의 이 경위가 원충연 사무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내용들이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지금 보고하실 수 있어요?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때 복지부 청사 1층 커피숍에서 원충연을 만났는데 그때 복지부 국장

급 이상 비리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성용 경위가 한 이야기가 ‘문제 있으면 경찰청으로 보고를 해야 하고 비선으로 보고하는 일은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보도내용에 나와 있는 이해훈 의원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은 물어보지 않았고 원 사무관을 만나기 전에 경찰 출신 김충곤 과장이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용 경위가. 경찰청 소속 다른 외근 정보관들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직됐을 무렵에는 파견 경찰관 등이 출입부처 비리를 알려 주면 이번에는 손을 봐 주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손을 봐 줘요? 그 자료를 이따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또 하나……

선관위 사무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사무차장입니다.

○백원우 위원 차장님, 이 자료를 보면—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입니다—원충연 사무관은 총리실 소속의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사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요. 이 공무원의 메모에 이런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장 대선활동 관련 부서 만들, 이미지 관리, 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략 2008년도인 것 같아요.

이것이 현직 시장이 대선을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한 부서를 만들었고 관련해서 인사를 발령했다, 이것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적인 수첩도 아니고 공무와 관련된 수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무차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뒤에 실무자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사전선거운동인데 사전선거운동을 총리실에서 적발을 했어요. 직원까지 발령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관권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것 누가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이게 선거법상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고 뭐고 그냥 그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도 그거고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팩트만 있는 거예요. 이 팩트만 가지고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뭐 공소시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직 시장이 대신 관련 이미지 부서를 만들고 직원을 발령했다? 정보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사무관이 이것을 수첩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을 인지하신 그 국장님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니,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선관위 업무 수십 년 하신 분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저도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부서를 책임지고 계신 고위공직자로서는 입장을 갖고 계셔야지요, 이것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읽어 드린 그대로예요. ‘서울시장 대선활동 관련 부서 만들(이미지 관리) → 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직 시장 때의 일이고 그것을 총리실에 있는 사찰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적발을 한 겁니다. 수첩에, 적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런 사실은 팩트로서 인정한다고 대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그 부서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성격이 어떤 정책이나 시정 홍보를 위한 것이면……

○백원우 위원 대선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이종우 다만 선거를 관여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또 접근 방법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정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백원우 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여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가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선관위의 헌법적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능동적으로 준비하셔서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하라고 선관위에 수십억, 수백억 예산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안경률 백원우 위원 좀 정리해 주세요.

○백원우 위원 지금 저희가 국회가 많이 어수선향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 행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권력의 이너 서클(Inner circle)들이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무슨 상임위 차원의 카테고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될 때 진짜 헌법을 걸고 국민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22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국민 앞에 했습니다.

어떻게 권력의 일부 집단들이, 이너 서클들이, 특정 지역 출신들의 이너 서클들이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해서 공직자들을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사찰을 하고……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이 발의했던 징수통합법은 제가 보건복지위 해서 잘 아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책부서에서 관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찰부서 소위 정보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간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침 저희 행안위와 관련된 경찰 업무와 또 선관위 업무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자료를 저한테 주고 가시고요.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후도 머뭇거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난간 일이라고 해서 나중에 기소를 못 하고, 기소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 또 1000만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공공연하게 시장 재임 기간 중에 대선활동을 위해서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직원들을 파견했다라고, 발령을 냈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사찰된 것, 사찰된 것은 오세훈 시장도 시장이니까 사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경률 백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원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경찰청 그다음 선관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찰청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도 백원우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선 팩트를 좀 검증을 하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더 추가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백원우 위원님께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쓴 글이 팩트인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약 팩트라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조직을 공공연하게 설치할 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봐 지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결국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는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법을 좀 검토해서 백원우 위원께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안건들이 법안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고 흥 길	김 소 남	김 정 권	김 충 조
김 태 원	박 대 해	백 원 우	안 경 룰
안 효 대	유 정 현	윤 상 일	이 명 수
이 인 기	임 동 규	정 수 성	조 승 수
진 영	최 규 식		

○출장 위원(1인)

이 윤 석

○청가 위원(1인)

이 석 현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박 상 은 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연	호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제 2 차 관		안	양	호
경 찰 청 장		조	현	오
소 방 방 재 청 장		박	연	수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장		이	영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차 장	이	중	우
---------	---	---	---